

# 최신 판례 예규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중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3)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 ■ 질 의

- 질의인은 '20.0.00.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22.0.0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 질의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302, 2023.03.29

## ■ 질 의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 취득 시,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2020.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B),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는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  
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  
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  
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25, 2023.08.09

#### ■ 질 의

- 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규정이 적용되는지

#### ■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 ■ 질 의

-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